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삭제 등〉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54호)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2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삭제	6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 벌금형 금액 등 상향 조정 ..	13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19

I. 제안경위

1.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5554호)

가. 발 의 자 : 박희승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4.

다. 회 부 일 : 2024. 11. 15.

2.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5625호)

가. 발 의 자 : 박희승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5.

다. 회 부 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5554호)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각종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고 있음.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선거 과정에서 의견과 사실의 주장이 섞여 있는 후보자 간 공방은 최종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조차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음.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선인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최근 법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행위나 후보자비방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음. 나아가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음.

이에,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및 제251조 삭제 등).

2.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5625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나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두어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안 제264조 등).

나.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0조제6항 등).

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30조제7항 등).

Ⅲ. 검토의견

1.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허위사실공표죄 (§250)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처벌	<u><삭 제></u>
후보자비방죄 (§251)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처벌	

현행법은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구 분	내 용		
허위사실 공표죄 (제250조)	① 당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공표하게 한 자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낙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공표하게 한 자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이하 벌금	
	③ 당내경선 관련	제1항에 규정된 행위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에 규정된 행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딥페이크영상 표시의무(§82의8②) 위반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에 규정된 행위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비방죄 (제251조)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비방죄 조항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당시와 현행법 조항이 동일하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은 동법이 제정된 이후 처벌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¹⁾

헌법재판소는 동죄의 입법목적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

1) “1997년 배포 전 단계 행위의 선전문서 소지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고, 2000년에는 출생지·행위를 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역감정 조장 행위와 기타 흑색선전에 대해 부분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고, 소속을 소속단체로 변경함. 2015년에는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가 그 대상으로 추가됨. 이처럼 처벌 범위를 확대한 대에는 가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특정인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공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인 동시에 이러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임.” . 박채림·박아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제3호(2023), p.58.

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음.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의 입법목적>

구 분	헌법재판소 판례
허위사실 공표죄 (2022헌바299)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향후 그런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추후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후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헌재 2009. 9. 24. 2008헌바168 참조). 따라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헌재 2022. 3. 31. 2019헌바509 참조).”
후보자비방죄 (2010헌바53)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은 선거시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자행하여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혼란까지 야기하였던 과거의 선거 현실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다. 즉,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동죄가 적용되는 여러 구체적 사례를 보면 동죄의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이 일단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는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크게 발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

2) 조국,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비판적 소론”, 비교형사법연구 17권1호(2015), p.163.

해 각종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³⁾ 선거 시기만 되면 정치권의 소모성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⁴⁾

또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규제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거의 유사한 법 조항들을 통해 허위사실 관련 행위들이 중복적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⁵⁾

유사한 입법례로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각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3) “중국 요(堯)임금은 궁궐 다리 위에 나무를 세워 놓고 백성들에게 왕이나 정치에 대하여 그릇됨을 지적하는 말을 쓰게 하여 스스로 반성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이 나무는 ‘비방지목(誹謗之木)’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왕에 대한 비방은 범죄가 아니라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열렬한 찬성과 성원,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야멸찬 비판과 조롱을 수반한다. 선거가 무덤처럼 고요해지면, 민주주의는 무덤 앞 묘비명의 문구로 전락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는 웅성웅성(喧喧囂囂), 즉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떠들어서 시끄러워야 하는 법이다”

조국,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비판적 소론”, 비교형사법연구 17권1호(2015), p.173.

4) 서울경제(2024.4.8.), “선거운동 기간에만 수백건...총선전략 된 묻지마 고발”

5) “미국의 입법은 허위진술로 인한 개인적 인격권이 침해당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내용의 진위에 기반을 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채림·박아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제3호(2023), p.78.

<유사 입법례>

구 분	관련 법 규정	
형법	§307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7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1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 기본법	§47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다른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처벌되는 행위(가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 등)가 다른 법률로 처벌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벌칙과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에 대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법 제18조·제19조⁶⁾)

와 당선무효(법 제264조⁷⁾), 공소시효(법 제268조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판례집 7-1, 478>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立法裁量) 내지 형성(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形)이 그 죄질(罪質)의 경중(輕重)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犯罪)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혹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이 헌법규정이 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法定形)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立法政策)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6) 현행법 위반(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 선거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7) 현행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당선무효

8)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나, 형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적용시 7년

따라서,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할 필요성과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 벌금형 금액 등 상향 조정

개정안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규정 시 벌금형의 최저 금액 및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 등을 모두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법 벌금형 금액 (\$18①제3호)		100만원		1천만원			
피선거권 결격사유 국회법 벌금형 금액 (\$19제4호)		500만원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형 규정 (\$230 등)		벌금형 최저금액	300만원 또는 500만원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	100만원(\$255④) ~ 750만원(\$256②)				
당선무효 벌금형 금액 (\$263 등)		회계책임자 등	300만원				
		당선인	100만원				
공무담임 제한 벌금형 금액 (\$266)		100만원					

현행법은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의 벌금형 금액은 100만원으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국회법」상 국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의 벌금형 금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규정 시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250④)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에 따라 벌금형의 액수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금액은 회계책임자 등의 경우 300만원으로, 당선인의 경우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벌금형의 금액도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⁹⁾ 특히,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법률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금액을 크게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가령, 「저작권법」의 경우 1993년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9) 법률신문(2018.2.13.), “벌금 100만원과 당선무효 제도 이대로 좋은가”
동아일보(2002.3.15.), “100만원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위헌소지”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지침)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금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¹¹⁾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과거 902개 법률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검토한 결과 뜸썹날썹한 벌금형이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¹²⁾한 바 있음.

10) 「저작권법」(법률 제4541호, 1993.3.6.시행) 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第60條第3項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저작권법」(법률 제20358호, 2024.8.28.시행)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11)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제45조(법정형) ①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41조에 따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규정할 수 있다.

- ②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 ③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벌금액의 적정수준을 정한다.

1.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최고액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2.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3. 불법 취득한 이익의 박탈이나 국고에 미친 금전상 손실에 대한 보전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정도 및 태양에 따라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가격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다.

12)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09.7.27.)

“현행 902개 법률의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검토한 결과,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

이에 개정안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규정 시 벌금형의 최저금액 및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 등을 모두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헌법재판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당선무효로 규정한 현행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의 수준을 의원직 박탈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¹³⁾

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큰 편차를 보였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들쭉날쭉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3) 다만,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 조항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한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도 존재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당선무효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는 기본권 제한 여부를 선거범죄의 형사재판 결과에 위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선거범죄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나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그 제한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 법원의 자유로운 재량하에 있는 벌금에 관한 선고형량에 의해서, 더군다나 그것도 전혀 객관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는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9헌마476, 판례집 23-2하, 806>

“일반적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은 형벌체제상 중한 형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도 중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의 수준을 의원직 박탈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6헌마1075, 판례집 20-1상, 124, 133 참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불법선거로 인한 피해가 있어 온 것을 볼 때, 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여러 기준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기준을 선택한 것 자체를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는 왜 굳이 선고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미만이면 무효로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게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선택의 결과이므로, 단순히 벌금 액수만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설령 그 기준을 1,000만 원이라고 정하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으며,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 수준에서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당선무효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달리 될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하여 과잉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 벌금형 금액 등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의 반영 필요성과 공정한 선거 보장과 선거법

죄 억제에 위해 엄격한 벌금형 액수를 유지할 필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 벌금형 금액 등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5554호)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삭 제>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公表하거나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を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公表하거나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を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年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

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
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
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
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
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
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
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
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
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
니한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
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
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
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삭 제>

제260조(양벌규정) ① -----

② (생략)

② ~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5625호) 조문대비표>

[illegible]

한 者(刑이 失効된 者도 포함한다)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選舉日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者는 被選舉權이 없다.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 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4. ----- ----- -----
가. <u>500만원</u>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u>1천만원</u> -----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 ----- <u>5천만원</u>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政黨・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家族・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選舉事 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第1 4條(政黨 및 候補者の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 있는	② ----- ----- ----- ----- ----- ----- -----

會社 등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期間중 포장된 膳物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選舉人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金品을 운반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 (생략)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

----7천만원-----.

③ -----

-----7천만원-----
-----.

④ -----

-----5천만원-----
-----.

⑤ (현행과 같음)

⑥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

⑦ -----

-----3천만원-----
-----.

1. ~ 3. (현행과 같음)

⑧ -----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② 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罰金에處한다.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년 이하의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罰金에處한다.

1.・2. (생략)

②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년 이하의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罰金에處한다.

③ (생략)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 ① 第97條(放送・新聞

-----5천만원-----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1. ~ 3. (현행과 같음)

②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

1.・2. (현행과 같음)

②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③ (현행과 같음)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 ① -----

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 한)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u>1千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u>2千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① 選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 는 <u>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u> <u>金에 處한다.</u>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⑥ (생 략)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죄 등) ① (생 략)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 이상 3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 5. (생 략)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 ----- -----<u>5천만원</u> -----. ② ----- -----<u>7천만원</u>----- -----. 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① ----- ----- ----- -----<u>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5천만원</u>-----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천만원 이상 1억</u> <u>원 이하의</u>-----. 1. ~ 5. (현행과 같음)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
---	--

이 法에 의한 壁報·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設置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撤去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

-----2천만원-----

② -----

-----3천만원-----

③ -----

-----3천만원-----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

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3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

-----3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

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騷擾 · 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 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 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 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 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u>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u> 罰 金에 處한다. ②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5條(投票所 에서의 武器攜帶罪) ① (생략)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연설 · 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u>6</u> <u>00萬원이하의</u> 罰金에 處한다. ③ (생략) 第246條(多數人의 選舉妨害罪) ① (생 략) ② 第243條 내지 第245條에 規定된 행위를 할 目的으로 集合한 多數人 이 관계公務員으로부터 3回 이상의 解散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 散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主導的 行	----- ----- ----- ----- ----- ----- ----- ----- ----- ----- <u>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u>----- -----. ② ----- ----- ----- ----- ----- ----- <u>1억원</u>----- -----. 第245條(投票所 에서의 武器攜帶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3</u> <u>천만원 이하의</u>-----. ③ (현행과 같음) 第246條(多數人의 選舉妨害罪)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
---	---

爲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舉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選舉人名簿에 故意로 選舉權者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姓名을 詐稱하
거나 身分證明書を 僞造・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方法으로

-1천만원-----.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

-----3천만원

② _____

-----5천만원

第248條(詐偽投票罪) ① -----

5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② -----
-----1천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③ -----

--3천 만 위-----.

[illegible]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3천만원-----
-----.

1. ~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4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 략)

④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4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0.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2. (생 략)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2.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2천만원-----
---.

1. ~ 4. (현행과 같음)

③ -----
-----2천만원-----.

1. ~ 4. (현행과 같음)

④ -----

-----2천만원-----.

1. ~ 10. (현행과 같음)

⑤ -----
-----1천만원-----.

1. ~ 12. (현행과 같음)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
-----5천만원-----.

1. · 2. (현행과 같음)

② 第81條第6項・第82條第4項・第113條・第114條第1項 또는 第11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選舉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三者[第116條(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規定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寄附를 指示・勸誘・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17條(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3천만원

③ _____

_____ 3천만원 _____
_____.

④ (현행과 같음)

第258條(選舉費用不正支出 등 罪) ① -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u>2千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第259條(選舉犯罪煽動罪) 演說・壁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煽動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u>600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舉費用制限額의 200分の 1이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u>300만원</u> 이상의 벌금형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u>300만원</u> 이상의 벌금형	-----<u>5천만원</u>-----. 1. (현행과 같음) 第259條(選舉犯罪煽動罪) ----- ----- ----- ----- ----- ----- ----- -----<u>3천만원</u>-----.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 ----- ----- ----- ----- -----<u>1천만원</u>----- -----. ② ----- ----- ----- ----- -----<u>1천만원</u>-----
--	--

[illegible]

第264條(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
選無效) -----

1천만원 이상의

-----.

[illegible]

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
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
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の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 5. (생략)

[illegible]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
의 제한) ① -----

-----1천만원 이상의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